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8
----------	-----

제출년월일 : 1996. 12.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96 정기재물조사결과 시·도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소모품의 범위기준이 현재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가액기준이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어,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실화하기 위함.

주요골자

소모품의 범위기준중 취득단가 상향조정

물품의 분류에서 비품과 소모품의 품종구분 기준중 소모품의 범위기준을

“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가 3만원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파손되기 쉬운 물품 ” 을

“ 취득단가 10만원 이하의 물품 ” 으로 단가 상향조정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92조

기타참고사항 : 별첨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품종구분기준 (2)의 제4항중 “3만원” 을 “10만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